# 2024년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복수 가입용)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만기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험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1년이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개시일(보험료 송금일자)로부터 2025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u>갱신 가입자는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가입 신청 및 보험료 입금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보험가입은 록톤코리아에서 운영하는 <u>'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서비스'</u>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locktonpi.com)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안내문 5페이지의 가입절차를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본 보험은 대한변호사협회 단체계약으로 운영되며 주간 보험사는 DB 손해보험(취) 입니다.

#### 1. 보험료 3% 인하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2024년도 갱신 및 가입 보험료가 전년대비 3% 인하되었습니다.

#### 가. 2024년 보험료

	자기부담금 (청구당)	변호사 1인당 평균 연 매출액 (전년도 기준)								
보상한도 (청구당/연간총)		1억이하	1.5억이하	2억이하	3억이하	4억이하	5억이하	5억초과		
		변호사 1인당 연간 보험료 (단위: 원)								
	3백만원	146,000	163,400	187,000	214,400	258,800	331,800	365,500		
5천 / 5천	5백만원	124,300	140,600	162,000	175,200	222,800	282,300	328,600		
	1천만원	92,600	101,500	116,200	132,300	167,700	214,400	275,200		
	3백만원	195,600	219,700	253,200	289,300	355,400	453,000	568,100		
1억 / 1억	5백만원	175,200	195,600	225,700	258,400	315,300	355,700	505,400		
	1천만원	136,800	153,200	176,800	202,600	253,500	322,900	413,100		
	3백만원	254,600	283,800	327,200	371,700	455,600	581,900	730,400		
2억 / 2억	5백만원	232,500	258,800	299,100	340,200	414,700	528,300	663,900		
	1천만원	191,900	215,000	246,700	279,500	350,400	446,200	562,800		

<sup>\*</sup>복수 가입 시 총보상한도액은 1청구당 보상한도액의 2배수 적용(단, 변호사 2명 시 동일)

#### 나. 무사고 가입기간에 따른 할인율

갱신가입에 한하여 무사고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이 적용 됩니다.

무사고기간	1년 ~ 2년	3년 ~ 4년	5년 ~ 9년	10년 ~ 14년	15년 이상
할인율(%)	0%	10%	15%	20%	30%

#### 다. 사고 할증율 (보험금 수령 후 3개년 적용)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령보험금 규모에 따라 3개년 할증이 적용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조사 진행 중(추산보험금 포함) 갱신 시 10% 할증

수령 보험금 규모	1 년차	2 년차	3 년차	
1 천만원 이하	30%	0%	0%	
1 천만원초과 ~ 3 천만원이하	60%	30%	0%	
3 천만원초과 ~ 5 천만원이하	100%	60%	30%	
5 천만원초과 ~ 1 억원이하	150%	100%	60%	
1 억원 초과	200%	150%	100%	

#### 라. 복수 가입 시 보험료 할인율

동일한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님들이 보상한도액을 공유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복수가입 변호사님 수에 따라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인원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할인율(%)	10	15	18	21	24	27	30	33	35	37	39	40	41	42
적용율(%)	90	85	82	79	76	73	70	67	65	63	61	60	59	58

<sup>\*</sup>복수 가입 시 총보상한도액은 1청구당 보상한도액의 2배수 적용(단, 변호사 2명 시 동일)

## 2. 고용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 담보 특별약관

<u>피보험자(변호사)가 고용한 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기간 중에 발견된</u> <u>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약관 "Dishonesty Extension(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u>을 선택 가입하면 직원 횡령도 추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기본 담보의 50%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약 보상한도는 기본 담보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직원 수 10명 초과 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보상한도액 (청구당/연간총)	공제금액	고용인 1 인당 보험료		
25 백만원 / 25 백만원		70,000 원		
5 천만원 / 5 천만원	5 백만원	81,000 원		
1 억원 / 1 억원		112,000 원		

- 고용직원 일괄가입조건 이며 보험기간 중에 직원 신규입사/퇴사로 인하여 인원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록톤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직원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원으로 등록된 직원으로서 변호사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 등 친족이 사무원으로 등록된 경우 가입 제한됩니다.
- 최초가입 이후 인지시점에도 연속적으로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기본담보의 자동보고연장기간(70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u>사고가 인지(Discovery)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u>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통지가 되지 않을 경우 면책 처리됩니다.

# 예) 보험료 예시 : 변호사 2명, 고용직원 3명, 연매출액 4억원 (변호사 1인당 평균 2억원) 3년 무사고 갱신 할인율 10% 적용 / 변호사 2인 복수가입 할인율 10% 적용

구분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기본	고용직원의 부정행위 추가 가입			
담보 기준	배상청구기준	인지(발견) 기준			
보상한도액	1억원 (1청구당 및 총보상한도)	5천만원 (1청구당 및 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5백만원	5백만원			
보 험 료 <b>225,700원</b> (변호사 1인당)		<b>81,000원</b> (고용직원 1인당)			
납입보험료	<b>365,630원</b> (225,700원 x (1-0.1) x (1-0.1)) x 변호사 2인	<b>243,000원</b> 81,000원 x 고용직원 3인			
총 납입보험료	608,630원				

#### 3. 보험조건에 관한 사항

1) 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Claims-made Basis)

(변호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배상청구기준 증권)

2) Retroactive Date: Each Insured's Retroactive Date

(소급담보일 : 각 피보험자(변호사)의 소급담보일 적용)

3) Extended Reporting Periods Endorsement

Automatic Extended Reporting Period: 70 days (자동보고연장기간: 70일)

단, 변호사전문직업인배상 기본담보에 한하여 적용

4) Policy Territory & Jurisdiction : Korea only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 : 대한민국)

5)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징벌적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6)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Clause (원자력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7) Contractual Liability Excluded (계약상의 가중책임 부담보)

8) Consequential Loss Excluded (결과적 손해 부담보)

9) All Costs & Expenses are included within the Limit of Liability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액 내 포함)

10) Claims Co-operation Clause(손해사고처리협조 특별약관)11) Millennium Exclusion Clause(서기2천년 부담보 추가약관)

12) War & Terrorism Exclusion (전쟁 및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13)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No (re)insurer shall be deemed to provide cover and no (re)insurer shall be liable to pay any claim or provide any benefit hereunder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 of such cover, payment of such claim or provision of such benefit would expose that (re)insurer to any sanction, prohibition or restriction under United Nations resolutions or the trade or economic sanctions, laws or regu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or United States of America.

14) Unless covered by the Dishonesty Extension,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of the Policy Wordi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rovision of the "Innocent Insured", any claims or loss arising out of any dishonest, any intentional, dishonest, malicious, criminal or illegal act by the Insured shall

not be covered.

(고용직원의 부정직 (또는 사기행위)확장 조항을 추가 가입하지 않는 한, 보통약관의 담보조항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보험자"조항 등) 본 증권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종업원에 의한 고의, 부정직, 악의, 범죄, 불법행위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담보되지 아니함)

- ※ 선의의 피보험자 부담보 특별약관(Innocent Insured Exclusion Clause)
  2011년 증권부터 선의의 피보험자 부담보 특별약관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통약관상 다른 피보험자의 범죄, 사기 등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동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한 선의의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동 조항은 고의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보험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2011년 증권부터 보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15) Dishonesty Extension (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Optional (고용직원의 부정직 (또는 사기행위)확장 조항: 선택가입 단, 변호사 유자격자 제외, 친족 등 제외)
- 16)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전염병 부담보 특별약관)

#### 4.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5. 상품설명 확인서

이 보험상품의 주요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한 후 받는 확인서로서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가입신청 시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와 함께 상품설명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6. 보험가입 전 업무의 담보여부 및 고지의무

이 보험은 보험가입 전의 업무로 발생한 사고나 가입 당시 이미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원인에 기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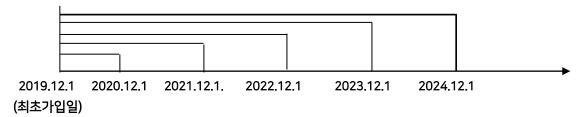
#### 7. 보험가입 후 통지의무

피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청구는 없었지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록톤코리아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즉시 보험사에 서면에 의한 사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상황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8. 배상청구기준 증권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u>최초 보험가입일(소급담보일)</u> 이후의 업무로 인한 사고가 보험가입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있어야 보상이 되는 배상청구기준증권의 특성 때문에 갱신이 되지 않으면 유효한 보험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19년12월1일 최초 가입하신 변호사님의 경우 보험담보기간 예시



\*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중의 업무로 발생한 사고라도 <u>보험종료일(2024.12.1</u> 00:01)로 부터 70일이 경과하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갱신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 9. 보험약관 확인 요망

이 보험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보상의 기준이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라며, 록톤코리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서비스'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locktonpi.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bar.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가능) 추가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는이 보험의 중요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0. 갱신 및 가입 절차

보험 갱신 및 신규가입은 록톤코리아에서 운영하는 <u>'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서비스'</u>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locktonpi.com [ 네이버 검색창에 '록톤코리아' 검색 ]

\* '다음' 검색창은 사용 X

- ①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계약 갱신' 클릭 (가입정보 확인, 보험조건 선택, 최종 보험료 확인)
  - \* 신규 가입자는 '가입 신청' 클릭 후 진행
- ③ '신청서 최종제출'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전에는 보험조건 변경 가능)
  - \* 갱신 증명서 출력은 12월 3일부터 가능하며 그 이후는 보험료 납부 다음날 가능)
- → 복수가입은 록톤에서 아이디 등을 부여하니 록톤으로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신규 가입 원하시는 개인 변호사님은 "변호사등록증"을 먼저 록톤으로 보내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확인후 가입 진행되니 "변호사등록증" 팩스 송부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 상품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보험업무협약에 따라 안내 및 제공되며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 보험중개㈜에서 가입신청 및 사고접수 등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전문인보험 가입 서비스" https://www.locktonpi.com

**문의 및 안내** 전화 : 02) 2011-0300 / 02) 6324-3852 ~ 6

팩스: 0503-8379-2008 / 02) 2011-0301

담당 : 이순옥 상무, 윤 원 이사

윤자영 부장, 박순정 과장, 이채은 주임

5/5